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6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윤재옥 · 김선교 · 김 건
김상훈 · 백종현 · 박충권
안철수 · 박수민 · 이주영
서천호 · 박형수 · 안상훈
한기호 · 엄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21조제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행정안전위원회 가.·나. (생략) 다.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사무에 관한 사항</p> <p>라. (생략)</p> <p>10. ~ 17. (생략)</p> <p>② (생략)</p> <p>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생략)</p> <p>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다)</u>----- 라. (현행과 같음)</p> <p>10. ~ 1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 ----- -----.</p>